日本 자판기 관계법령해설(3)

2.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의 방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설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경위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의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통칭 독혼법)은 소화59년에 구리코 금영사건(경찰청 지정 제 114호 사건)이 발생한 이래 유통식품에 독물을 혼입해서 기업공갈, 자판기의 취출구에 독을 넣어 음료를 판매한 범죄가 급증하고, 이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소화 62년 9월에 법률 103호로서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유통식품의 독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시책, 제조 판매업자부터 경찰등에의 누출 등의 설치를 정하는 것과 함께 독물 혼입 등의 행위를 행한 자나 누출 등에 태만한 것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물 혼입 방지법으로 정의한 「유통식품」「독물」이란

※「유통식품」이란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통식품이란 공중에 판매되는 음식물의 것을 말한다. 가령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나 야채, 음식점에서 공급되는 음식물, 자판기에 적재되어있는 음식물이나 운반중이나 저장중의 것등이 유통식품에 해당한다. 단지, 무상으로 배급되는 음식물이나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의약품이나 의약품외품도 대상외로 되어있다.

※「독물」이란

동 법에서 정의한 독물이란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험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구체적으로는 독물 및 독물 취급법 별제 1 및 2에 포함되어 있는 것 외, 약사법에 의해 독약, 극약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독물 혼입의 정의

• 자판기 취출구에의 독물방치

자판기에서 소비자가 일단 사 가지고 간 음료는 유통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음료에 후에 독물이 들어있어도 독물의 혼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판기의 취출구에 누군가가 독을 넣어 음료를 취한 경우 내장되어 있는 유통식품과 「혼재」되어진 것으로 봐 독물의 혼입으로서 처벌된다.

제조업자의 의무

• 바로 압출이 필요

제조업자(수입 또는 판매업자도 포함)가 유통식품에의 독물 혼입이 있는 것을 알 때에도 곧바로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에의 압출이 의무화 되어있다. 또 조사기관에의 협력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정하는 시책에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자판기업계의 대책

• 취출구 개선과 스티커 부착

이 종의 범죄는 소화 59년 말부터 62년에 걸쳐 20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업체에서 세운 대책으로는 자판기의 취출구를 외부에서 보기 쉽게 개선할 것, 경찰・방범협회와 (사)전국청량음료공업회가 소비자를 위한 주의환기를 위해 스티커를 제작하여 자판기에 부착하는 것등이 의무화 되었다. 또 평성 10년7월~10월에 걸쳐 같은 범죄가 발생하여 업계에서는 스티커의 재부착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벌칙규정

• 독물 혼입 사례의 불압출도 처벌대상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첨가,도포)을 행한 자 또는 독물이 혼입된 음식물을 유통식품으로 혼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것에

- 안 내 문 -

- 사기전에 취출구 중에 불번한(번호를 달지 않는) 제품이 없는가 확인해 주세요.
- 취출구에 나온 제품의 뚜껑이나 용기에 이상이 없는가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 불편한 제품을 보았다면 해당 점 또는 경찰에 연락해주세요.

경찰 · 방범협회 · (사)전국청량음료공업회

의해 사망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독물의 혼입 등이 있던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압출을 않았다거나 허위가 있는 압출을 행한 경우는 20만엔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조문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의 방지책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화 62년 9월 26일 제정)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법을 정한 것과 함께 유통식품에 독물을 혼입 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 하는 것에 의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방지, 국민생활 평안과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법률에 있어 「유통식품」이란 공중에 판매되는 음식물(약사법 소화 35년 법률 제145호)에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을 제외함을 말한다.

2. 이 법률에 있어 「독물」이란 다음 각 호에 포함된 내용물을 말한다. (약사법에 규정한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을 제외)

(1)독극물취급법(소화 25년 법률 제 303호)별표 제 1및 제 2에 포함된 물 (약사법에 규정한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을 제외)

(2)약사법 제 44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대신이 지정한 의약품

(3)전 2호에 된 내용물 이외의 내용물로서 그 독성 또는 독성이 전 2호에 포함된 내용물의 독성 또는 독성에 기준한것.

(국가의 시책등)

제 3 조

국가는 유통식품에 독물이 고의에 의해 혼입되고 첨가된 혹은 도포 되는 것, 또는 독물이 혼입되고 첨가되고 혹은 도포 된 음식물이 고의에 의해 유통식품과 혼재 되는 것 (이하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이라 말한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2)지방공공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3)유통식품의 제조 (취급자 및 가공을 포함한다)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말한다)는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의 방지에 노력하는 것과 함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시책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경찰관등에의 압출)

제 4 조

제조업자등은 그 영업에 관한 유통식품에 대해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 등이 있는 것을 안 때는 곧바로 그를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에 의해 압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사기관에의 협력)

제 5 조

제조업자등은 그 사업에 관한 유통식품에 관해서의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에 관한 범죄의 조사가 원활히 하여지기 위해 조사기관에 대해 필요한 협력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저 행정기관에의 통보)

제 6 조

경찰관 또는 해상보안관은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이 있는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또는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의 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 때는 그 사실을 관저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의 방지를 위해 지도 또는 조언등

제 7 조

주무대신은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의 해가 있다고 인식되는 때는 제조업자등에 의해 해당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해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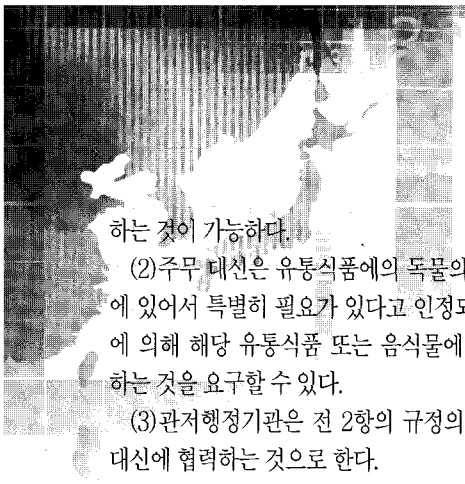

하는 것이 가능하다.

(2)주무 대신은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조업자등에 의해 해당 유통식품 또는 음식물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관저행정기관은 전 2항의 규정의 실시에 관해서 주무대신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4)전 3항의 주무대신은 해당 유통식품의 유통을 맡아보는 대신으로 한다.

유통식품의 적절하고 원활한 유통의 유지등을 위한 조치

제 8 조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는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이 있는 경우 또는 유통식품에의 독물의 혼입등의 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통식품의 적절하고 원활한 유통의 유지를 하고 또는 제조업자등의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조업자등에 대해 필요한 지도, 조언, 자금의 알선 등의 조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벌칙)

제 9 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유통식품에 독물을 혼입, 첨가, 또는 도포한 자

2. 독물이 혼입되고 첨가되고 또는 도포 된 음식물을 유통식품과 혼재한 자

(2)전항의 죄를 범하고 그것에 의해 사망한 자는 무기 또는 일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제 1항의 죄의 미수죄는 벌한다.

(4)전 3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법 (명치 40년 법률 제 45호)의 죄로 인정되는 때는 그 행위자는 동법의 죄를 비교하여 엄중하게 처단한다.

(5)제 1항 또는 제 3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경감한다.

제 10조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압출을 하지 않거나 또는 압출을 한 자는 20만엔이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의 대표 또는 법인간 혹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한 전항의 위반 행위를 안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 그 법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동항의 형을 처한다.

3. 수도법

수도법의 해설

수도법제정의 경위

수도법은 소화 32년 6월에 법률 제 177호로서 제정되어 동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동법 1조에 규정되어있는 대로 「수도의 개설 및 관리를 청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도를 계면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의 보호 육성, 청정하고 풍부 저당한 물을 공급, 공중위생의 향상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

제 1조 이하 57조에서 구성되어 있다.

자판기나 그 영업에 관련하는 조문은 제 4조[수질기준], 제 16조[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등이다.

자판기에 관련한 정령・성령・소통등

「수도법시행령」(정령・소화32년 12월)

「수도법시행규칙」(후생성령・소화32년 12월)

「수질기준에 관한 성령」(후생성령・소화58년 8월)

수질・수도에 관한 요건

6째의 요건을 준비할 것

법률 제 4조로서 수질에 의해 공급된 물은 이하의 요건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 병원생물에 오염된 것이 아닐 것. 또 병원생물에 오염된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생물이나 수질을 포함하지 않을 것.

(2) 시안・수은・기타의 유독 물질은 포함하지 않을 것.

(3) 동, 철, 불소, 페놀 기타의 물질을 그 허용량을 초과하여 포함하지 말 것.

(4) 이상한 산성 또는 알칼리성이 아닐 것.

(5) 이상한 악취가 없을 것. 단지 소독에 의한 악취는 제한다.

(6) 외관은 거의 무색투명으로 있을 것.

또 각 호에 규정된 생물, 수질등의 허용량등의 기준은 소화 58년 8월에 후생성령으로서 고시된 「수질기준에 관한 성령」에 정해져 있다.

자판기급수장치에 관한 규정

수도법에서 정의한「급수장치」란

수도법에 정의된 급수장치란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자가 시설한 급수관에서 분리하여 설치된 급수관 및 이것에 직결하는 급수용구의 것이다.

자판기 중에서는 수도에 직결하는 것 및 정수기가 그것에 해당한다.

급수장치를 설치한 자판기에 관한 규정

수도직결형의 자판기는 전술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 제 16조에 기초해 시행령 제 4조에 정해진「급수장치의 구조 및 수질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수도직결형의 자판기에 관계하는 사항으로서는 이하에 의한 것이 규정되었다.

- 배수관에의 취출구의 위치는 타 급수장치의 취출구에서 30c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배수관에 취출된 급수관의 구조는 해당 급수장치의 물의 사용량에 비해 현저하게 크지 않을 것.
- 수압 및 기타의 하중에 대해 충분한 압력을 가지고 또 물이 오염되거나 누수되거나 할 염려가 없는 것일 것.
- 동결, 파괴, 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설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급수기구의 인정제도

자기인정과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정

전술한 급수장치로 사용하는 기구 등을「급수기구」로 부르고 종래는 (사)일본수도협회에 의한 형식 승인제도의 기초, 동 협회가 수도법률시행령 제 4조의 급수장치의 구조 및 수질의 기준에 기초해 정해진 조사기준에 적합 한 것이 필요로 되고 있다.

그러나 평성 9년 3월 급수장치의 사용규칙의 합리화를 취하는 관점에서 수도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해「급수장치의 구조 및 수질의 기준에 관한 성령」이 공시되고 급수장치의 구조·수질의 기준의 명확화, 성능기준의 추가등에 의해 급수장치가 만족해야 할 성능요건의 정량적인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에서, 해당기구의 기준 적합 검사도 이것까지의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 (제조자가 직결 사용자나 수도사업자에 대해 공공연하게 되는 시험 데이타를 제시하는 방법등에 의해 수도법으로 정해진 기준에의 적합을 증명) 또는 제 3자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제도에도 이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제 3자 인증제도는 일정의 자격요건을 준비된 중립적인 제 3자 인증기관이 제조자에서의 요망에 의해 해당제품이 수도법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인정하고 기준에 적합해 있는 경우에는 제조자에 대해「품질인증마크」의 표시를 정하고 그 마크에 의해 기준에 적합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수도직결형의 자판기 및 정수기도 해당인증의 대상품목으로 되어있고 자기 혹은 제 3자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이 필요

수도법으로 정의한「전용수도」,「간이수도」란

※전용수도와 간이전용 수도의 차이

기숙사, 주택 요양소등의 수도나 기타의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도 이외의 수도로서 100인이상의 주거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을「전용수도」라고 한다. 단지 기타의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을 수원으로 또 저중 또는 지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규모가 정령에서 정한 기준 (입구 25mm이상의 도관 전장이 1,500mm, 수구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이하)것은 제외한다.

전용수도에 대해「간이전용수도」라는 정의가 있다.이것은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도와 전용수도이하의 것에 있어 수도사업자의 수도에서 공급을 받은 물을 수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 시설 규모가 정령에서 정한 기준 (수조의 유효용량 10㎥)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빌딩, 맨숀의 취수조 등이 간이 전용수도에 해당한다.

「전용수도」「간이전용수도」는 모두 수도법의 전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공급되는 물은 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로 동 수준의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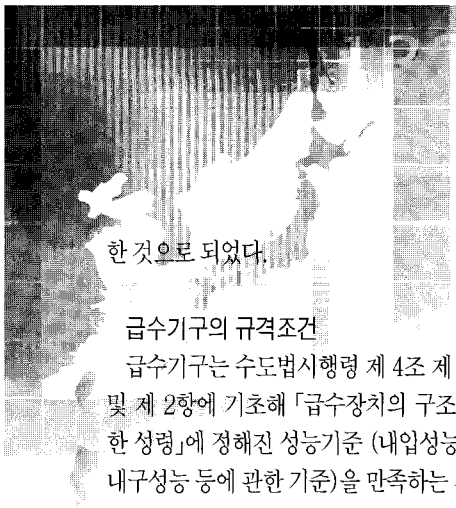

한 것으로 되었다.

급수기구의 규격조건

급수기구는 수도법시행령 제 4조 제 1항의 구조, 수질기준 및 제 2항에 기초해 「급수장치의 구조 및 수질의 기준에 관한 성령」에 정해진 성능기준 (내입성능, 수질성능, 내한성능, 내구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 인증을 받지 않는 급수장치

식품위생법에서의 영업허가는 자판기를 경유하여 공급된 물이 「음용 적합의 물」인가 어떤가에 관해서의 판단에 있어서 현행인증제도의 제 3자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품이 아닌 경우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다.

정수기의 규격

일본수도협회규격

정수기도 종래는 (사)일본수도협회에 의한 형식승인 품목으로서 정수기 형식조사기준에 기초해 형식승인 되어 있지만 「급수기구의 구조 및 재질의 기준에 관한 성령」이 공포된 것에 의해 동번조사기준이 폐지되고 평성 10년 3월에 일본수도협회규격 「정수기」이 제정되었다.

동 규격은 성령 기준에서는 평가 할수 없는 정수기의 제거능력이나 과능력을 포함하는 성능에 관한 규정 외, 구조 (구조일반, 역류 방지 장치등), 재료, 표시등이 규정되었고 현행의 인증제도에 있어서의 적합 검사 기준으로 되어 있다.

또 이 중의 표시기준으로 사용자의 보수에 의한 과수의 위생성을 유보하기 위해 「매일 아침 방류시간 초 또는 분」을 정수기 본체에 명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명기되어있다.

법률조문

수도법(령) (소화 32년 6월 15일 제정)

(용어의 정의)

제 3 조

이 법률에 있어서 「수도」란 배관 및 기타의 공작물에 의해 물을 사람 음용에 적합한 물로서 공급하는 시설의 총계를 말한다. 다만 임시로 시설된 것은 제한다.

(2) ~ (4) 제외

(5) 이 법률에 있어 「수도사업자」란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를 받고 수도사업을 경영하 는 자를 말하고 「수도 용수 공급 사업자」란 제 26조의규정에 의한 인허를 받은 수도용수공급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이 법률에 있어 「전용수도」란 기숙사, 사택, 요양소등에 있어 자가용의 수도 그 기타 수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수도이외의 수도에 있어 백명을 넘는 자에 그 거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 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타의 수도에서 공급을 받은 물을 수원으로서 또 그 수도시설 중 지중 또는 지표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의 규격이 정령으로 정해진 기준이하로 있는 수도를 제한다.

(7) ~ (8) 제외

(9) 이 법률에 있어 「급수장치」란 수요자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사업자의 시설한 배수관에 서 분리하여 설치된 급수관 및 이것에 직결하는 급수용구를 말한다.

(수질기준)

제 4 조

수도에 의해 공급되는 물은 다음의 각 호에 기술된 요건을 준비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1) 병원생물에 오염된 또는 병원생물에 오염됨이 의심되는 생물 혹은 물질을 포함하지 말것.

(2) 시안, 수은, 기타의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말것.

(3) 동, 철, 불소, 페놀, 기타의 물질이 허용량을 넘어 포함하지 말 것.

(4) 이상한 배성 또는 알카리성을 포함하지 말 것.

(5) 이상한 악취가 없을 것. 다만 소독에 의한 악취는 제외.

(6) 외관은 거의 무색 투명으로 있을 것.

(2) 전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성령으로 정한다.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

제 16 조

수도사업자는 해당수도에 의해 물의 공급을 받는 자의 급수장치 구조 및 재질이 정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공급 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그 사업자의 급수 계약의 신입을 거부하거나, 또 그 사업자가 급수장치를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전까지는 급수를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